

EPC, 10月 7日에 發効

—PCT도 出帆 서두를 듯—

PCT(國際特許協力條約)의 發効와 앞을 다투고 있던 유럽特許協約(EPC)이 PCT에 앞서 지난 10月 7일에 발효하였다. 이로써 EPC는 뭔 헌에 設置될 유럽特許廳이 開所되는대로來年 6月 1일부터 加盟國의 出願受理가可能하게 되었다.

따라서 PCT도 年內에 발효하고 내년 6월 1일에는 출원수리를 예정하고 있던 當初의 方針을 앞당길 可能性도 없지 않으나 예정대로 不可避할 것이다.

EPC의 加盟國은 EEC(유럽經濟共同體)諸國이 될 것이며 이들國家는 1957年に 締約한 EEC條約, 즉 로마條約의 核心構成國의 法律 및 行政規定에 同質化한다는 條項에 依據하여 結末을 볼 것이다.

한때 유럽을 中心으로 하자는 프랑스와 世界를 相對로 하려는 西獨과의 사이에 意見이 맞서 協約發効가 遲遲不振했으나 美國이 主動이 된 PCT의 進展에 刺戟을 받은 프랑스가 西獨에 護步함으로써 협약발효를 促進시켰다. 또한 經濟情勢의 惡化를 理由로 애매한 態度를 取해오던 英國이 言語, 法制가 같은 英聯邦諸國에의 影響力行使를 勘案하여 협약발효에 同調함으로써 PCT에 앞서게 되는 主因이 되었다.

EPC加盟國은 EPC특허청에의 出願과 더불어 同協約加盟國을 모두 指定하게 되므로 自動的으로 同加盟國에의 出願效果가 發生한다. 이로써 파리條約, 즉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과 다른 點의 主要한 출거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파리조약가맹국에의 출원에는 가맹국마다 출원해야 하게 되어 있으나 EPC에는 EPC특허청에만 출원하면 가맹국 모두에 출원한 결과가 된다.

EPC의 機構는 特許廳長아래 5個部로構成되어 여기에서 출원, 審查, 審判, 異議申請 등의業務를 處理하며 심사는 출원후 1년의 지난 다

음부터着手할 예정이다. 調査는 第1部, 審查는 第2部, 審判은 第3部, 行政管理는 第4部, 法律·國際涉外는 第5部가 擔當하고 심사는 化學, 物理電氣, 機械一般, 審查系·異議系의 方式審查, 引用文獻의 分類등 30個課로 나누어 審查官만도 500名을 目標로 하고 있다.

同協約은 序章 外에 12章 178條로 되어 있다. 第1章에는 一般規定 및 組織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서 2장에 特許實體法, 3장에 유럽特許出願, 4장에 賦與節次, 5장에 異議申請節次, 6장에 抗告節次, 7장에 共通規定, 8장에 國內法에 대한 効力, 9장에 特別協定, 10장에 國際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11장에 經過規定, 11장에 終結規定을 두고 있다.

이 협약에 1973년 10월 5일署名한 국가는 英, 佛, 獨語의 3個國語를 正文으로 하여 英國, 프랑스, 西獨, 벨지움, 덴마크, 그리스, 에이레, 이탈리아, 리히텐시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14개국이다.

이어서 펠란드, 유고슬라비아, 모나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 1974년 4월 5일까지 서명하게 되어있다.

日本—中共間 商標協定

—相互 異質的 制度下에서—

日本과 中共은 지난 9월 29일에 商標에 관한相互保護協定을 맺었다.

兩國은 1972年부터 同協定의 締結을 推進하였으며 中共은 簡單한 行政協定을 主張하다가 結局에는 國際趨勢에 따라相互保護協定으로 結束을 낸 것이다. 이들 두 나라의 속셈은 이른바 和平條約을 中心에 두고 商去來의 貿易를 더욱 굳히려는데에 真意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動)

(向)



國際動向

中共에는 商標條例라는 것이 있다. 그 目的은 品質管理機能 즉 품질을 重視하며 政府가 規定한 品質基準에 適合하지 않으면 登錄이 되지 않는다.

日本의 商標法은 出所表示機能을 中心으로 制定하고 있어 두 나라의 制度는 異質的인 面이 있다.

중공의 조례에는 例를 들어 機械類 같은 것은 一定한 設計, 藥品에는 製造工程, 成分, 藥効 등이 품질기준에 到達하지 못하면 상표의 使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상표의 有効期間은 無期限이지만 품질기준에 未達하면 即時 取消하게 된다. 물론 個人的 상표 사용은 一切 不許이며 公司, 人民公社 등의 集團에만 許容되고 있다.

이번 協定에서 중공은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에 따른 日本人 出願者의 中共內國民待遇는 認定하지 않기로 한 點이 유별나다 하겠다. 또한 중공에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등 工業所有權制度는 없으며 公司나 人民公社의 構成員이 이룩한 發明이나 考案 등의 精神的創作은 그 著者가 所屬되어 있는 集團에 歸屬하고 그 창작을 實用化하여 利用함으로써 집단의 收益이 向上되어 分配가 增加되면 창작자의 報償을 配慮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공도 國際趨勢에 발돋움하기 위해 제네바條約會議에 업서버를 派遣하는 등 積極的으로 국제적 화롭속에 뛰어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發明考案制度의 改善努力

—蘇서 25%의 利益補償金도—

蘇聯은 工場이나 研究所는 물론이고 設計事務所까지 國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技術的인 發

明考案을 秘密取扱할 必要性이 없으므로 國家의 方針으로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의 普及, 實用化가 積極獎勵될 뿐 아니라 發明, 考案者의 權利나 名譽를 保證하는 體制의 擴充에 더욱 腐心하고 있다.

소련의 큰 공장에는 대체로 知名勞動發明家를 長으로 하는 發明開發研究室을 設置하고 있으며 一般組織으로는 800萬名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全蘇發明·考案者合理化協會(VOIR)가 있다. 있 협회는 各工場이나 研究所에 支部를 두고 特許, 實用新案의 出願節次, 技術文獻에 대한 指導, 提案된 발명·고안의 登錄, 발명자의 利益保護에 助力한다.

발명자의 權利는 蘇聯閣僚會議에 隸屬된 國家發明·發見者委員會에서 法的으로 保護하되 발명·고안의 實用化調整, 發明出願의 審查, 證明書의 發給 등도 이 위원회의 所管이다. 현재 同委員會에 등록되어 있는 발명·고안은 約 50萬件으로 推算된다.

소련에서는 발명·고안의 권장을 위해서 年間 315百萬루블이 投入되어 그 結果 發明·고안의 實用化로 얻어 지는 附加利益은 연간 48억루블이라고 蘇聯中央統計局이 추정하고 있어 1루블의 투입에 따른 經濟的 效果는 15루블이 되는 셈이다.

소련에는 권리의 個人所有는 認定되지 않으나 발명자는 그 代價로서 補償을 받기도 하며 補償率은 이익의 最高 25%까지로 하되 2만루불은 超過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經濟價值가 顯著히 높은 것은例外도 있고 海外에 라이센스로서 팔렸을 경우에는 應分의 보상금을 받기도 한다.

그외에 勞動條件의 改善이나 作業의 安全에 도움이 되는 發明·고안에 대하여는 工場長이 보상금을 주기도 한다.